

학부모/보호자 서비스 미시행 알림

날짜: _____ 학생 성명: _____ 학생 생년월일: _____

 _____ 님:
 (부모/보호자 성명)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을 개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IEP 팀이 아동이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기 위하여 특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아동의 IEP에 명시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학교 수업일 10일 이내에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기관은 아동의 IEP가 준수 되지 않은 날로부터 수업일 3일 이내에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가 전달하여야 하며, 지역구의 보상 서비스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 규정 14-8.02f(d-5)섹션) 본 섹션의 목적상 "학교 수업일"은 IEP 서비스 부족과 상관없는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는 날이나 서비스는 준비되었으나 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시작을 요청한 날짜	서비스 제공자 이름/직책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보상 서비스를 요청하는 교육구 절차에 대한 설명:

비준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상 안전 조치, 우려 사항 및/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름: _____ 직책: _____ 전화번호: _____

감사합니다.

 (서명)

이름: _____

직책: _____